

## 동명대학교 홍보대사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학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동명대학교 홍보대사 또는 명예홍보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명대학교의 위상과 동명인의 대학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22.05.12.)

제2조(임무) 동명대학교 홍보대사 또는 명예홍보대사(이하 "홍보대사"라 한다)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(개정 2022.05.12.)

1. 동명대학교(이하 "대학"이라 한다)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·외 활동
2. 대학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
3. 외부기금 (발전기금 및 장학금 등) 유치에 관한 활동
4. 그 밖에 대학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

제3조(위촉)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명대학교 총장 (이하 "총장"이라 한다)이 위촉한다.

1. 대학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
2. 대학의 홍보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·외 인사
3. 그 밖에 대학에 관심이 많고 대학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

② 총장은 특별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.

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4조(해촉) 총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1.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
2.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한 경우
3.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

제5조(운영)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입학홍보처장이 총괄한다.(개정 2019.10.1.,2022.4.1.)

② 총장은 대학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해마다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,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대학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제6조(예우)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, 홍보대사가 각종 대학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.

② 입학홍보처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대학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.(개정 2019.10.1.,2022.4.1.)

③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2조제2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.

이 규정은 2016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.